독일 보험감독법상 생명보험의 영역획정에 대한 법적 문제*

김 은 경**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보험영역획정의 일반
1. 영역획정의 의의
2. 영역획정 원칙의 발전 배경 및 변화추이
3. 감독법상의 위치
4. 적용범위
Ⅲ. 영역획정을 위한 위험의 유형화
1. 위험의 유형화
2. 위험의 조합과 보험
Ⅳ. 생명보험에서의 영역획정
1. 생명보험에서의 영역획정의 발전
2. 기타의 보험영역에서의 동향
Ⅴ. 영역획정과 효율적인 기업운용
1. 영역획정의 근거
2. Solvency II와 영역획정
Ⅵ.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보험이라는 법적 상품에서는 자연법적인 불가능성을 상상하기 어렵다. 예컨대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자연법적으로 사람의 죽음이란 일생에서 한 번은 반드시 있는 일이고 이를 근거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 탄생했던 것이다. 또한 계약으로 인수한 위험이 법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규범상 보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적 불허대상이 위험을 환산하여 이를 기초로 보험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 손해의 경우

* 본 논문은 생명보험협회에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의 일부에 가필하여 달리 완성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손해의 정도 및 손해발생의 개연성 등을 위험률로 산출해내기가 매우 어렵다면 이 특정영역에 대한 영업의 허가를 보험자에게 내주는 문제도 일견 법적인 불가능성과 연관되는 것이다. 보험자가 특정위험에 대하여 보험으로 인수를 할 수 없다면 희망하였던 보험의 범위에서 법적인 불가능성이 생길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보험이란 자연법적으로 가능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것을 보험이라는 법적 상품으로 재생산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만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보험에서의 위험은 그 특성에 따라 특정한 영역으로 구분되고 특정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상품으로 등장하여 보험소비자의 필요에 부응하게 된다. 다만 보험상품이 보험의 부보대상이 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위험의 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묶어 위험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를 한데 섞어 백화점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으로 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오로지 생명보험업만 운용할 수 있다는 영역획정에 따라 오로지 이 분야의 영업만이 허락되어 있고,[1] 손해보험의 영역에서 생명보험의 영역에 속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의 같은 논리로 영역획정에 따른 원칙이 적용된다. 각 분야마다 영역획정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험법적 그리고 통계적 의미에서 있다고 보인다. 확실한 통계적 방법과 인식을 통하여 운용되는 보험 중의 하나가 생명보험인데, 그 속에 존재하는 장점이 주로 손해보험영역에 내재되어 있는 고도의 가변성(Variabilitäten)으로 인하여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곧 생명보험의 측면에서 본 영역획정의 의도라고 본다. 위험의 측정방법과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른 두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별개로 운용하는 것이 보험소비자 보호에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보험영역의

1) Knauth, "Spartentrennungsgebot und Konzentration in der Versicherungswirtschaft", in FS Kollhosser, *Recht und Risiko* (Bork/Hoeren/Pohlmann, 2004), 203쪽.

획정이 가지는 장점과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험계약법은 총론적으로, 보험의 영역획정에 관한 보험감독법 규정은 각론적인 측면에서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보험종목이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다른 종목의 영업에 결부되어 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문제나 이 하나의 종목이 모든 다른 보험종목을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차단하자는 측면에서 보험의 영역획정은 중요하다. 또한 서로 특성이 다른 위험을 구분한 후 특성이 유사한 위험끼리 유형적으로 조합하여 보험영업을 허가함으로써 영역이 서로 다른 보험끼리 상호간 생길 수 있는 상충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부터 영역의 획정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진 보험영역에 대하여 독일 보험감독법상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고 향후 선진보험시장에서의 보험영역획정에 대한 동향을 예견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보험영역획정의 일반

1. 영역획정의 의의

독일 보험시장에서 보험영역획정의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와 시장의 현상이 맞물려 있는 과거 현실 때문이다. 보험영역획정의 문제를 명문상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보험감독법 개정 이후부터였다. 물론 1903년에 제국감독청(Das Kaiserliche Aufsichtsamt)이 생명보험과 물보험(Sachversicherung)의 혼합된 영업형태를 허가할 것인지의 사안을 놓고 이를 재량으로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보험영역획정과 관련한 첫 번째 사안에 맞닥뜨린 바 있었

다.[2] 제국감독청이 그 당시 허가를 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화재보험, 우박보험 또는 운송보험 등과 같은 손해보험종목에 비하여 생명보험에서는 위험의 대상이 사람의 신체나 생명이라는 특수성과 계약관계가 장기적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신뢰가 더욱 요구되며 통계적 방법에 의한 안정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허가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3]

특정보험영역은 다른 보험영역과 구분되는 보험영업주체에 의하여 단독으로 영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곧 보험에서의 영역획정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보험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영역을 동시에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보험에서 영역획정을 하려는 목적은 자산의 분리이고,[4] 영역획정에 의하여 다른 영역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특정 영역에 있는 위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을 보호하자는 것이다.[5] 보험영역획정과 관련하여 독일은 보험감독법(Versicherungsaufsichtsgesetz; 이하 VAG)에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다. VAG 제8조 제1a항에 따라 생명보험 영업에 대한 허가와 다른 보험영역의 영업 허가는 각각 별개의 것이고 상호를 통합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Solvency I에 따른 보험사의 지불능력의 산정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전통적으로 구분하려는 결과가 되었다.[6] VAG 제8조 제1a항의 취지가 확장되어 동법 제12조 제1항의 의미에서 의료보험과 생명보험

---

2) Rohde-Liebenau, Wolfram, "Spartentrennung als Ordnungsprinzip der Versicherungsaufsucht",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Versicherungswissenschaft* (1973), S. 4 Fn. 2.

3) Meyer, Ernst, *Die Spartentrennung im Gemeinsamen Markt, Versicherungswirtschaft im Gemeinsamen Markt* (Baden-Baden 1967), 120쪽.

4) Langheid/Wandt/*Grote*, *VVG* (C.H.Beck, 2010), 174쪽; Dreher ZVers Wiss (1988), 619, 633.

5) Prölss/*Präve*,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12. Aufl.(C.H.Beck, 2005), Rn. 36.

6) Helmut Gründl, *Solvency II & Risokomanagement: Umbruch in der Versicherungswirtschaft* (Gabler, 2005), 527쪽.

에서도 원론적으로 서로 상호간 영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영역획정 원칙의 발전 배경 및 변화추이

2.1 독일법에서의 입법적 배경

2.1.1 입법화과정에서의 영역획정

1901년 5월 5일 보험감독법의 최초의 법안에는 보험영역획정에 관한 명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감독관청의 판단에 맡겨 자유재량으로 하려는 입법자의 의도에서 기인한 결과였다. 그 당시로서는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영업허가를 청구한 자에게 혼합된 보험영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독청으로부터 불허방침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던 때였고, 1901년 보험감독법의 시행 전에 이미 혼합된 형태 즉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동시에 영업할 수 있는 보험사를 허가한 바 있었고, 이렇게 영업허가를 얻은 보험사가 보험감독법 시행 후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7] 보험감독법에 보험영역획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둘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국감독청이 1903년 혼합된 영업형태의 보험사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불허방침의 의사표명을 시작으로, 1904년에는 생명보험과 대형의 손해보험이 혼합된 형태로는 향후에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였다.[8] 1908년에는 이러한 취지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판단이 뒤따랐는데, 외국의 보험자가 자신의 본점소재지인 본국에서 엄격한 영역획정 하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독일에서의 영업을 할 수가 없음을 이유

7) Prölss/*Präve*, a.a.O., § 8 Rn. 31.

8) Müller, Helmut, "Der Grundsatz der Spartentrennung im Gemeinsamen Markt nach Verabschiedung der Koordinierungsrichtlinien für die Lebensversicherung",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Versicherungswissenschaft* (1979), 152쪽.

로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게 되면서 이는 역내 외적인 보험영역획정의 문제가 되었다.[9] 감독청이 복수의 영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기업에 대하여는 영역획정을 강제하지는 않았으나, 신규사업을 허가하는 과정에서는 보험영역획정을 계속해서 확장해나갔다. 더불어 보험영역획정과 관련하여 향후에 발생할 동요를 저지하기 위하여 1918년에는 양자택일의 제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 보험감독원장이 영역획정을 함으로써 당장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생명보험기금을 통해서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 경우 보험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기초자본의 어떤 부분이 해당 보험종목의 영업에 속하는 것인지를 기업이 충분히 명시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10] 그러나 실무에서는 앞선 바와 같이 보험영역획정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으나 입법화 과정에서는 영역획정을 완전한 원칙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입법적 기초를 구축해내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보험감독원은 영역획정을 계속적으로 지향하여 발전시켜 나갔고, 보험기업은 영역획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조절하기 위하여 콘체른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11]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복수영업을 하는 기존의 보험자가 영역획정의 원칙하에 놓이게 되었다.

2.1.2 영역획정 대상의 확장

초기 입법자는 전체 보험산업을 생명보험의 영역과 나머지 보험영역만의 이분법적인 영역획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보험영역도 층간 영역획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는 1987년까지 모든 영역의 보험에서 영역획정을 시도하여 이를 적용하려고 했다.[12] 물론 이 보험영역획정의 원칙은 해를 거듭하면서

9) Meyer, Ernst, a.a.O., 120쪽.
10) Müller, Helmut, a.a.O., 150쪽 이하.
11) Meyer, Ernst, a.a.O., 121쪽.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거쳤고 입법적인 혁신적 진보는 1980년대 말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독일의 이러한 변화와는 달리 유럽연합차원에서는 이 시기에 보험영역획정의 원칙을 포기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생명보험에 대한 입법사적 발전과정을 보면 1983년 VAG 제8조 제1a항에 의하여 영역획정의 기본원칙이 명문으로 도입되었고, 입법이유서에 법률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과 유익성 측면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13] 의료보험도 VAG 제8조 제1a항에 의하여 명문으로 확정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료보험은 법률상의 강제보험이 아닌 사적 의료보험분야를 말하고, 이 의료보험분야도 다른 보험분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14] 사회 보험체계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보호하려는 취지를 살려 영역획정을 명문화 한 것이다. 그러나 권리보호보험, 즉 법무비용보험의 경우는 1987년 6월 22일 유럽권리보호보험지침 제8조에 따라 권리보호보험의 영역획정을 포기하였음[15]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침은 독일 국내법으로 전환을 통하여 VAG 제8a조 제1항에 나타나있다. 문제는 권리보호보험과 자동차책임보험 영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충돌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16] 이렇게 제기된 비판에 따라 1987년 6월 22일 유럽신용보험지침에서 이러한 영역획정의 원칙이 중지되었다. 독일의 보험에서의 영역획정은 원수보험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재보험사에게는 영역획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17] 그러므로 재보험은 VAG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생명재보험과 비생명재보험 영업 모두가 허용된다.

---

12) Knauth, a.a.O., 206쪽.

13) Begründung zu Art. 1 Nr. 5 des Referentenentwurfs eines 14. Änderungsgesetzes zum VAG, BR-Drucks, 429/81, 20쪽.

14) Prölss/Präve, a.a.O., § 8 Rn. 31.

15) Prölss/Präve, a.a.O., § 8 Rn. 32.

16) Prölss/Präve, a.a.O., § 8 a Rn. 2.

17) Looschelders/Pohlmann, *VVG* (Carl Heymanns, 2009), EinF. Rn. 26.

2.2 유럽연합의 측면에서의 법적 변화

유럽연합 내에서 영역획정 분야에 대한 회원국 보험감독법의 통일화 문제는 시작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1973년 유럽손해보험제1지침에서의 주요쟁점이 혼합보험사의 영업에 관한 원칙에서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VAG 제7조 제2항에서 명문으로 의료보험, 권리보호보험 그리고 신용보험 등에서 그 영역획정을 고수할 것을 법에 유보해 놓은 상태였다.[18]

이후 1975년 독일연방의회의 금융위원회가 보험영역획정과 관련하여 이 원칙을 명백하게 고수할 것임을 표명하였다.[19] 더욱이 1979년 유럽공동체 차원의 제1차 생명보험지침을 통하여 공동체 내의 모든 회원국에 영역획정을 강제하였다. 다만 이에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즉 자산의 보장(Besitzstandswahrung)에 관한 것이었다. 자산의 보장을 위하여 경과기간을 두었고, 보험사가 기존의 보험영역과는 다른 것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모회사와는 분리된 행정 및 기타 특전 등이 허용되었다.[20] 다만 그 당시의 감독관할과 관련하여 제1차 생명보험지침에 따라 보험영업을 하는 소재국의 감독관청이 보험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 외에도 보험영역획정을 엄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21] 그러나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점차적으로 영역획정과 관련하여 유럽공동체의 의지는 약화되고 1987년에 유럽권리보호보험지침 제8조와 유럽신용보험지침 제1조 2호를 통하여 특정부분에서는 영역획정의 원칙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

18) Prölss/Präve, a.a.O., 10. Aufl. § 8 Rn. 35.

19) BT-Drucks 7/3537. 3쪽.

20) Müller, Helmut, a.a.O., 160쪽.

21) Markus Beringer, *Das Spartentrennungsprinzip der Lebensversicherung: Nach Umsetzung von Solvency II noch zeitgemäß?* (VVW, 2007), 70-71쪽.

3. 감독법상의 위치

보험분야에 대한 감독원칙은 법규범과 감독관청의 실제적인 업무활동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그러한 원칙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3.1 법률상의 감독원칙

- 영역획정의 기본원칙
- 보험영역에서 이질적인 영업의 금지
- 의료보험에 대한 특별규정
- 특수 사정 하에서의 특정보험종목에 책임계리인의 협력
- 특수 사정 하에서의 특정보험종목에 독립수탁자의 협력
- 특정의 보험종목과 보험협회에서 피보험자의 동등대우의 원칙
-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독

3.2 실제상의 감독

- 협의의 영역획정
- 보험계약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의 필요성 고려
- 대량거래의 구조에 대한 고려
- 시장의 투명성 확보

독일의 경우는 영역획정을 매우 중요한 감독상의 원칙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나의 기업에서 생명보험의 영업과 다른 보험종목의 영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VAG 제8조 제1a항의 취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생명보험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종목의 영업을 하는 보험사는 생명보험과 관련된 영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더 본 법규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기업분리를 통하여서까지 영역획정을 고수하려는 취지는 보험상 보험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하려고 하는 것에서도 있지만, 이러한 종목의 보험영업은 주로 장기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특히 저축성보험의 경향이 있어서 개인의 가계유지와 관련하여 사회적 의미에 있다. 기술적으로 영역획정이란 보험자가 생명보험 내지 의료보험의 영업을 하게 된다면 그 외 다른 보험종목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영역획정에 해당한다.

보험사의 기업차원상의 업무획정 내지 분리를 통한 영역획정은 보험자가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영업상의 프로그램을 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경영학적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는 주로 보험콘체른 형성에 대한 주근거가 되기도 하였는데, 영역획정의 주목표는 일정영역을 분리하여 각각 수익률, 비용, 손익, 재산가치, 책임 및 고유자본을 법률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특별히 보험사의 분리과정에서 손익의 전가가 생명보험 내지 의료보험분야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다른 보험종목에는 이익으로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22]

협의의 영역획정을 일반적으로 영역자립원칙(Spartenautarkieprinzip)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보험감독원의 감독과정에서 발전된 기본원칙으로서, 이에 따라 통합보험(Kompositversicherung)[23]의 범위 안에서 각

22) Dieter Farny, *Versicheungsbetriebslehre* (VVW, 2006), 119쪽.

23) 통합보험은 손해보험과 상해보험 등의 모든 보험을 합쳐 만들 보험이다. 손해보험은 물건의 가치를 보험상의 보호대상으로 하거나(물건보험), 책임위험에 대한 위험의 방어 등을 보험상의 보호대상으로 한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이며 정액보험이므로 손해보험은 아닌데, 독일에서는 감독법상 근거에 의하여 손해보험과 합쳐져서 통합보험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통합보험은 생명보험자나 의료보험자가 아닌 손해보험자에게만 그 운용이 허용된다. 독일 보험협회의 전통적인 분류에 다르면 자동차보험, 일반 책임보험, 상해보험, 법무비용보험, 물건보험, 운송보험, 신용, 보증 및 신뢰보험 등이 통합보험의 대상이다(Unter dem Begriff Kompositversicherung werden alle Versicherungsarten der Schaden- und Unfallversicherung, außer der Krankenversicherung, zusammengefasst. Schadenversicherungen

보험종목이 영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통합보험의 영업에서 발생한 비용의 충당은 각 보험종목의 보험료 수익을 통해 나오는 것에서 하고 있고, 개별 보험종목 사이에 계획적인 횡적 보조는 금지하고 있다.[24]

4. 적용범위

생명보험의 영역획정 원칙은 VAG 제106c조에 따라 국내보험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곳에 영업상의 본점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외국계보험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다만 영역획정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보험사가 본국의 감독법에 근거하여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고 독일에서 영업소를 개설하여 보험영업을 하는 경우 보험영역획정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

dienen dem Versicherungsschutz von Sachwerten(Sachversicherung) sowie der Gefahrenabwehr von Haftungsrisiken. Die private Unfallversicherung – die zur Personenversicherung zählt und eine Summenversicherung, also keine Schadenversicherung ist – wird aus aufsichtsrechtlichen Gründen mit den Schadenversicherungen zur Kompositversicherung zusammengefasst, da sie nur von Versicherern, die sonst die Schadenversicherung betreiben, aber nicht von Lebens– oder Krankenversicherern betrieben werden darf. Klassische Sortierung(Versicherungszweige des GDV) für Kompositversicherung ist die:

- Kraftfahrtversicherung
- Allgemeine Haftpflichtversicherung
- Unfallversicherung
- Rechtsschutzversicherung
- Sachversicherung
- Transportversicherung
- Kredit–, Kautions– und Vertrauensversicherung.

24) Dieter Farny, a.a.O., 119쪽.

Ⅲ. 영역획정을 위한 위험의 유형화

1. 위험의 유형화

독일 보험감독법 부록 A에는[25] 영역에 따른 위험을 유형화하여 구분해놓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보험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획정된다.

---

25) EC 보험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종목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생명보험지침〉
⑴ 생명보험(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보험료 환급이 수반되는 생명보험, 연금, 상해보험,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고도상해보험(생명보험에 부가된 것에만 한정됨)
⑵ 결혼보험, 출산보험
⑶ 투자펀드링크 생명보험・연금보험
⑷ 장기건강보험
⑸ Tontine 연금
⑹ 자금상환업무
⑺ 단체연금기금 관리
⑻ 프랑스보험법 4편 4장 1절의 보험회사 업무
⑼ 사회보험법에 규정한 수명 기간에 관한 업무,
〈손해보험 제1차 지침 〉
⑴ 상해(업무상해 및 직업병 포함)
⑵ 질병
⑶ 육상차량
⑷ 철도차량
⑸ 항공기 기체
⑹ 해상, 호수・늪 및 하천 선박의 선체
⑺ 수송화물
⑻ 화재 및 자연재해
⑼ 재산의 기타 손해
⑽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⑾ 항공기 손해배상책임
⑿ 해상, 호수・늪 및 하천 선박 손해배상책임
⒀ 일반 손해배상책임
⒁ 신용
⒂ 보증
⒃ 기타 금전 손실
⒄ 소송비용
⒅ assistance: 부조
등으로 유형화되었다.

1. 상해(정액보험, 비용보험, 결합된 급부형태, 여객운송),
2. 질병(입원료, 비용보험, 결합된 급부형태),
3. 육상차량[26]보험(자동차, 고유의 원동기가 장착되지 아니한 육상차량),
4. 궤도차량(궤도차량에 발생한 총체적 손해),
5. 항공기(항공기에 발생한 총체적 손해),
6. 해상, 연안 및 하천 등의 선박(선박에 발생한 총체적 손해),
7. 운송물(사용된 운송도구와 무관하게 운송물에 발생한 총체적 손해),
8. 화재 및 자연재해(화재, 폭발, 홍수, 홍수 외에 다른 재해, 핵에너지, 지진 및 산사태),
9. 우박, 결빙 및 그 외의 물적 손해(3호에서 7호에 속하지 아니한 총체적 손해),
10. 고유원동기를 가진 차량에 대한 책임(자동차책임, 육상운송 외의 책임, 기타),
11. 항공기책임(항공기사용으로 발생한 총체적 손해),
12. 해상, 연안 및 하천 등의 선박책임(해상, 연안 및 하천 등의 선박의 사용으로 발생한 총체적 손해),
13. 일반적 책임(10호에서 1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일반적 책임),
14. 신용(일반적 지불능력, 신용수출대부, 할부거래, 담보대출, 농업대출),
15. 보증금,
16. 여러 가지 경제적 손해(직업적 위험, 불충분한 수입, 이상기온, 일실이익, 일반적인 기타경비, 예상 밖의 영업상 기타경비, 가치상실, 임차손실 및 수입손실, 언급한 것 외의 간접적 경제적 손해, 비상업적 금전손실, 기타 경제적 손실),
17. 법적 보호,

---

26) 궤도가 장착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18.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를 위한 지원금(주소지나 거소지를 벗어나 있거나 여행 중 위험, 다른 보험영역에 놓여있지 아니한 위험),
19. 생명(20호에서 24호에 속한 아니하는 것),
20. 결혼 및 출생보험,
21. 펀드와 관련된 생명보험,
22. Tontine식 보험,[27]
23. 저축성보험,
24. 양로시설이용보험,
25. 연금보험.

2. 위험의 조합과 보험

독일 VAG 부록 B에 따라 위에 언급한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조합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는데 허가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즉 상해에서 여객운송, 궤도가 장착되지 아니한 육상차량과 운송물 및 원동기장착의 차량이 합쳐져서 자동차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허가되거나, 상해의 여객운송, 궤도차량, 해상, 하천 및 연안 등의 선박, 운송물 및 해상, 하천 및 연안 등에서의 선박책임이 조합되어 해상운송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허가된다. 또한 화재 및 자연재해와 우박, 결빙 및 그 외의 물적 손해가 결합되어 화재 및 기타 재산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허가된다. 그 외 일반적 지불능력, 신용수출대부, 할부거래, 담보대출, 농업대출 등에 대한 신용과 보증금이 결합되어 신용보증보험으로 허가된다. 이와 같이 언급한 외에도, 항공보험, 책임보험, 손해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으로 허가를 받게 된다.

---

27) Tontine 행위(Tontinengeschäfte)는 톤티(Tonti)식 연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출자자 중 사망자가 있을 때마다 배당을 늘려 맨 나중까지 생존한 자가 전액을 받는 방법의 연금제도. 이태리 은행가인 Lorenzo de Tonti(1602-1684)에 의하여 고안된 것으로 보험이나 연금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발전되었다.

감독법의 취지에 따라 구분된 보험은 영역획정을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근본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영역획정은 근본적인 특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론없이 자리를 잡았고, 현재로서는 오히려 생명보험과 의료보험이 영역획정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영역획정은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영역간 특정의 제한없이 조합이 이루어져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생명보험은 생명, 결혼 및 출생보험, 펀드와 관련된 생명보험, Tontine식 보험, 저축성보험, 양로시설이용보험 등만을 제한적으로 조합하여[28] 영업을 허가한다. 근본적으로 생명보험의 허가와 다른 보험영역을 위한 허가는 서로 다른 체계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VAG 제12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의료보험의 영업을 위한 허가와 다른 보험영역의 영업을 위한 허가도 서로 다른 체계 하에서 인정된다.

위험의 유형화에 따라 생명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한정시키므로, 만일 생명보험의 위험요소에 다른 보험영역의 위험이 합쳐져서 영업허가를 구한다면 이는 감독법의 영역획정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심지어 생명보험에 앞서 언급한 것 외의 영역을 결합하여 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영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도 도달할 수 없다. 이는 생명보험이 그 자체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른 영역의 영업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배제시키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29]

---

28) 영역획정 차원에서 생명보험의 범위는 다소 포괄적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톤티연금, 자본공급영업 및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의 영업 등도 포함된다. 그 외에도 연금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Gesetzbegründung, BR-Dr. 23/94, 158쪽.

29) Prölss/Präve, a.a.O., § 8, Rn. 47.

Ⅳ. 생명보험에서의 영역획정

1. 생명보험에서의 영역획정의 발전

1920년 이후 생명보험에서는 영역획정의 원칙에 몇 가지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첫 번째가 책임보험과의 결합이 허용되었고, 두 번째가 공법적 영역에서의 상해보험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여 이를 보상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일부 생명보험사는 상해보험과 책임보험을 인수하고 특정부서에서 이를 운영하기도 하였다.[30] 이러한 예외는 공법적 보험영역에서도 적용되었다. 1931년 6월 6일의 개정된 보험감독법에는 영업계획서가 안정성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보험영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 취지의 규정을 보험감독법 제8조 제1항 2호에 두었는데 이것이 생명보험에서의 영역획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었고, 이로부터 매우 엄격하게 이 원칙을 고수해나갔다. 독일의 경우는 다른 보험산업에 비하여 생명보험이 특수한 것으로 평가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일반 공중이 정서적으로 합의한 바 있었고 이에 기초하여 당분간만이라도 영역획정의 원칙을 따르도록 한 후 다른 보험영역보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쪽으로 이 원칙을 유지해 나간 측면이 있었다.

1930년대 후반에는 4개의 보험영역에서 영역획정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영역이 획정된 보험사가 서로가 하나의 지붕 아래에 놓여있는 콘체른의 형식을 취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는 영역획정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콘체른의 범위에서 행정비용을 줄여가려는 협력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에 있었다. 이 같은 콘체른형성은 영역획정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졌고 무엇보다도 수

30) Schmidt, Reimer, *Die Niederlassungsfreiheit der Versicherer,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Versicherungswissenschaft* (1966), 268쪽.

평적인 콘체른, 즉 서로 나란히 공동의 지주회사를 형성하는 기업형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수직적인 형태의 콘체른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영역획정을 고수하는 기업이 다른 보험자로부터 지배받는 경우, 영역획정의 실행에 대한 위험이 있음이 인식되었다. 이에 연방감독원은 지배계약(Beherrschungsvertrag)[31]에서-무엇보다도 생명보험에서— 기업 간의 콘체른이 형성될 경우 영역획정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였다. 지배기업은 그 자신의 영업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적어도 영역획정에 관한 기본규정을 엄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했다.[32]

독일에서의 생명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특별보호대상이어서 보험산업의 측면에서 독일의 이웃에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물보험과 생명보험 간의 영역획정에 대한 제안을 끊임없이 하였다. 이 과정에서 1969년 경과지침(Übergangsrichtlinie)을 통하여 선택적 해결방법이 시도되었는데, 기존의 복수분야 영업보험사는 독일의 경우에서도 물보험이나 생명보험 중에서 하나의 영역만을 선택하여 영업을 해야 하고 나머지 하나에 대하여는 자회사로 옮겨야만 하는 것이 곧 선택적 해결(Optionslösung)로서 추진되었으나, 일정 시점까지 앞서 언급한 방식하에서 선택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시간적 제한을 두자는 내용의 타협적 제안은 실제적으로 거절되었다.[33] 이후 1972년에 다시 새롭게 보험영업을 시작하는 회사에게 의무적으로 영역획정의 이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복수분야 영업보험사만이 생명보험분야가 아닌 비생명보험분야에 대한 영업이 허락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을 도출해냈고,

---

31) 지배계약이라 함은 한 회사가 다른 기업에 편입 내지는 의존관계 하에 놓이는 계약으로서 주로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가 다른 기업과의 사이에 이러한 지배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형태의 회사가 된다. 독일에서의 주식회사법상의 지배계약은 주식회사법 제291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304조 이하에 특별규정이 있다.

32) Rhode-Liebenau, Wolfram, a.a.O., 44쪽 이하.

33) Müller, Helmut, a.a.O., 155쪽.

이는 1979년 5월 5일 제1차 협의지침(Koordinierungsrichtlinie)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근거가 되었다.[34]

독일은 보험에서의 영역획정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앞서서 예측하고 이를 반영하여 입법화한 국가로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보험감독실무의 기조가 입법에 반영한 경우이다. 독일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79년 유럽경제공동체(EWG)는 제1차 생명보험지침(Lebensversicherungsrichtlinie)[35]에서 공동체 내의 모든 국가는 영역획정의 원칙을 지킬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한 공동경영이 금지됐다. 그 당시 공동체 내의 다른 회원국의 경우에는 복수분야영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여기에 몇몇의 예외를 인정해야만 했다. 이후 1992년 6월 10일에 손해보험(92/49/EWG)과 1992년 11월 10일에 생명보험분야(92/96/EWG)에 제3차 지침이 결정되었다. 여기에 포함된 규제철폐는 유럽의 보험시장에서 영업소이전의 자유와 영업자유의 원칙을 허용한 바 있었다. 물론 여기에도 몇 개의 예외가 있었지만 독일에서는 유럽연합의 규제철폐와 관련한 내용을 국내법화하게 되었다. 결국 독일에서 영역획정을 위하여 규제철폐를 통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영업을 위한 허가와 보험사에 대한 감독 등은 보험사의 본점 소재지의 주무관청에 부여되어졌다. 이러한 허가방식과 감독방식으로 유럽연합의 전체 영역에서 보험영업에 대한 활동이 보장되었다. 영업활동국가의 감독관청은 보험사 본점(원적) 소재지 국가의 감독관청과 협력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보험영업 중 특정국가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활동국가의 감독관청과 본점소재지국의 감독관청이 상호협력하여 특정국가의 법규위반사건을 중재하기도 하였다.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79/167/EGW

34) Müller, Helmut, a.a.O., 155쪽.

35) Erste Richtlinie des Rates 79/267/EWG vom 5. März 1979 zur Koordinierung der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über die Aufnahme und Ausübung der Tätigkeit der Direkt versicherung(Lebensversicherung).

지침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생명보험에서의 영역획정의 원칙을 정하면서도 하나의 기업을 통하여 상해, 의료 및 생명보험영업을 동시에 허용하고 있는 선택권(Wahlrecht)이 회원국에게 물론 부여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선택권을 독일에서는 활용하지 아니하고 VAG 제8조 제1a항에 영역획정의 원칙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36] 국내적인 영역획정의 원칙은 기존의 복수영역 보험자가 유럽의 비영역획정 국가가 독일에서 무제한적인 영업자유의 원칙에 따라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을 동시에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방식과 충돌하여 적용되었다.[37]

이와 같은 독일의 국내법적 특이사항과 맞물려 영역획정의 문제가 자리를 잡아갔는데 VAG 제8조 제1a항 1문에서 생명보험의 영역획정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한 허가를 동시에 허용하지 않는다는 유럽법의 원칙에 상응하는 것임에도 국내의 보험사와 유럽회원국의 보험사에게 다른 양태의 영업가능성이 열려 있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서 독일 국내보험사에게는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규제철폐 이래로 독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소속의 보험사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라 독일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보험자의 수는 2005년 현재 85개이고, 독일 내에 지점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영업을 하는 것은 현재 758개의 유럽의 보험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독일에서 보험시장이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서 독일 보험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38] 그러므로 독일의 보험시장은 영역획정과 관련하여 향후에 유럽의 여타 보험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

36) Prölss/Präve a.a.O., 172쪽.

37) Präve ZfV 1994, 227, 228.

38) Markus Beringer, a.a.O., 77-78쪽.

2. 기타의 보험영역에서의 동향

2.1 의료보험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1927년부터 생명보험 분야와 같은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영역획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39]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지침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독일은 의료보험에서의 영역획정을 유지할 권한이 있다고 하는 규정[40]은 유럽손해보험 제3지침 제5조에 따라 포기하였으나,[41] 이후 독일은 유럽손해보험 제3지침을 국내법으로 변경[42]하는 과정에서 이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때에 VAG 제8조 제1a항의 제12조 제1항과의 관련성 및 결정적인 입법근거와의 관련성에서 차용되는 것처럼 의료보험에 관한 원칙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제한하는 입법을 하게 되었다.[43] 생명보험의 방법에 따라 영업을 하게 되는 기타의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원칙은 국내 보험사와 유럽연합의 지침하에 놓여있지 아니한 보험자에게도 적용된다.[44]

2.2 신용보험 및 법무비용보험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에 따라 1934년부터 신용보험에 대한 영역획정의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다른 분야에 비하여 매우 높은 위험성이

---

39) www.statistik.lmu.de/~kaiser/vortragspartentrennung.ppt, 2013년 12월 5일 검색.

40) 유럽손해보험 제1지침의 제7조 제2항 c.

41) 유럽손해보험 제3지침 입법근거 참조.

42) BGBl. I S.1630 입법 제1조 제항 5호 b, bb 참조.

43) Prölss/Präve, a.a.O.,. § 8 Rn. 38.

44) Fahr/Kaulbach/Bähr, *VAG* (C.H.Beck, 2007), § 105 Rn. 46, und §110 Rn. 2.

드러났기 때문에 논의의 중요성 또한 매우 높았다. 1937년에서야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법무비용보험 분야에서도 영역획정을 꾀하기에 이르렀다.[45]

그러나 1987년 6월 22일 법무비용보험지침 제8조에 따라 법무비용보험분야에서의 영역획정원칙이 포기되기에 이르렀다.[46] 이 지침의 취지에 기초하여 VAG 제8a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분야에서의 영역획정은 일반적으로 포기하는 현상이 유럽전역에 걸쳐 논의가 되었고 이에 독일의 경우도 보장기금과 같은 안정대책 등을 둠으로써 영역획정이 다른 제도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Ⅴ. 영역획정과 효율적인 기업운용

1. 영역획정의 근거

무엇보다도 독일에서는 특정이해관계에 있는 보험영역에서 그 영역이 가지는 고도의 사회정책적인 의미에 따라 생명보험사가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20012년도 독일 연방금융감독원(BaFin)의 보고서에 따르면 BaFin의 감독하에 있는 독일 보험사는 총 592개이고 그 중 생명보험사가 92개에 달한다.[47] 2011년 기준 외국생명보험사는 6개였는데 2012년에 7개로 1개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였다. 2012년 현재 체결된 존속계약의 건수는 9360만 건

45) 〈www.statistik.lmu.de/~kaiser/vortragspartentrennung.ppt〉, 검색일 : 2013.12.5.

46) Prölss/Präve, a.a.O., § 8 Rn. 32; 지침이 국내법으로 전환되기까지, 즉 1990년 6월 30일까지 법무비용보험, 신용보험, 보증보험 등에는 영역획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Dieter Farny, *Versicherungsbetriebslehre* (VVW, 2006), 119쪽.

47) BaFin-Jahresbericht 2012, 91쪽.

이고, 2012년 새롭게 체결된 보험료총액은 259,9 Mrd Euro(2011년 255,9 Mrd. Euro에서 1,6% 상승)로 독일에서 생존하는 자(독일 2011년 현재 인구 8천20만) 1인당 1.14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인당 생명보험료는 1,151 Euro로 유럽평균 1,151 Euro에 못 미치는 금액[48]이다. 생명보험에서 보장성보험의 부분은 2012년은 전년대비 6.8%로가 증가한 반면에 저축성생명보험은 동년대비 10%가 감소하는 추세이다.[49]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의 대한 대비책의 측면에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보험사의 파산은 피보험자의 삶의 존재기반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 등 치명적인 경제적인 부작용 및 손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생명보험과 기타 보험영역과의 영역획정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생명보험은 다른 보험영역에 비하여 보험계약기간이 장기이며 보험료도 고액인 편이고 보험자가 모아진 보험료 총액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유지하는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에게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생명보험의 건전성이 다른 보험에 비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다. 생명보험영역에서 영역획정을 고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생명보험산업의 존립기반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등의 보호에서이므로 그것만으로 근거가 있다고 본다. 사실상 1994년 유럽내 보험시장에서 영업소 이전자유의 원칙과 서비스제공자유의 원칙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이래로 다른 영역에서는 보험간 영역획정의 원칙이 포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내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유의 원칙에 따라 영역획정의 원칙을 취하지 아니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48) Gesamtverband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e.V. Jahrbuch 2012, S.10.;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일인당 생명보험료가 가장 많은 나라는 핀란드로 2844 Euro로 독일의 2.5배 정도에 이르는데 이는 독일이 전통적으로 국자에 의한 안정망체계가 잘 완비되어 있어서 생명보험에의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국가채무를 높이는 부정적 역할을 하므로 독일에서는 사보험에의 의존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49) BaFin-Jahresbericht 2012, 93쪽.

의 복수영업 보험사는 독일에서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생겨난 국내보험사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생명보험영역에서는 독일에서 정착하는 보험사는 입법자에 의하여 수호되고 있는 영역획정을 의무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2. Solvency II와 영역획정

2.1 Solvency II의 영향

보험법 영역에서 유럽공동체의 법은 우선적으로 감독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한 6개의 유럽지침[50]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위험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Solvency II의 규범지침[51]에도 이것은 적용되는 사안이다.[52] 이는 특정시기 내에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었다.[53] 독일은 2014년 1월 현재 Solvency II[54]가 직접 적용되고 유럽집행위원회는 모든 유럽연

50) 예컨대 Richtlinie 79/267/EWG des Rates vom 05.03.1979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zur Koordinierung der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über die Aufnahme und Ausübung der Direktversicherung(Lebensversicherung) (ABl. EG L 63 vom 13.03.1979, 1쪽).

51) Richtlinie 2009/138/EG des Europäischen Paraments und vom 25. November 2009 Rates betreffend die Aufnahme und Ausübung der Versicherungs- und der Rückversicherungstätigkeit(Solvabilität II).

52) Rüffer/Halbach/Schimikowski/*Brambach*, *Versicherungsvertragsgesetz* (Nomos, 2009). Einl. Rn. 17.

53) Richtlinie 2009/138/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5.11.2009 betreffend die Aufnahme und Ausübung der Versicherungs- und der Rückversicherungstätigkeit(Solvabilität II) (Abl. EG L 335 vom 17.12.2009, 1쪽).

54) Solvency II가 보험감독에 관한 규범이라고 하면, Omnibus II 는 은행 및 자산유동화관리에 관한 것이다; 이하 구체적인 것은 Oehlenberg/Stahl/Bennemann, "Von der Standardformel zum Internen Modellß ein Überblick über Solvencz II",

합 회원국이 2016년 1월 1일까지는 발효되어야 한다고 공표하였다.[55] Solvency II는 유럽전체를 아우르는 보험감독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56] 그러므로 독일의 연방금융감독원(BaFin)도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Solvency II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은 유럽연합에서 금융산업과 관련하여 지불능력에 관한 것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기자본에 대한 의식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던 것에서 비롯된다. 이는 바로 보험에서의 영역획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불능력의 원칙은 보험기업의 필수부가결하고 선택적인 자기자본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지불능력이라는 개념은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대한 충분한 보장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업의 최소자본금을 의미한다.[57] 여기에 필수적인 안정화자본 내지 지불능력자본은 보험사가 안정하게 영업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자본을 말한다.[58]

유럽연합은 2001년부터 보험권의 재무건전성 개선작업에 해당하는 Solvency II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금융권간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Basel II를 기본모델로 한 재무건전성 감독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04년 1단계 작업을 완료하여 최저수준[59]과 목표수준[60]

Handbuch Solvency II (Schäffer-Poeschel, 2011), 25쪽 참조.

55) 〈http://www.gdv.de/2013/10/solvency-ii-auf-der-zielgeraden/〉, 검색일 : 2013.12.27.

56) 〈http://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DE/Meldung/2013/meldung_131220_vorbereitung_solvency_ii.html〉, 검색일 : 2013.12.31.

57) Schmeiser, *Risikotheoretisch fundierte Ansätze zur Neugestaltung des Europäishen Solvabilitätssystems für Schadensversicherer*, 1997 Karlsruhe, 1쪽, Fn. 1; Markus Beringer, a.a.O., 83쪽.

58) Heistermann, *Risikomanagement und wertorientierte Steuerung im Kontext von Solvency II*, in Gerneral Cologne Re(Herg.): Assets & Liabilities, Nr. 1/2004(Köln, 2004). 20쪽.

59) 제1층인 최저수준(minimum level)은 일정수준 이상의 지급여력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제1 지급여력이라고 한다.

60) 제2층인 목표수준(target level)은 내부리스크통제수준에 상응하는 지급여력을 추가하여 이를 제2 지급여력이라고 한다.

인 2개 층의 필요자본과 이에 대한 시장 감시의 강화라는 2+1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는데 이때 Basel II 의 3층 구조[61] 틀을 보험권에 적용한 것이다. 즉 궁극적으로 Basel II에서 Solvency II로 진화된 것인데, 과거 Solvency I이 보험리스크만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에서 재무건전성까지를 반영하는 진보된 형태인 Solvency II로 발전한 것으로써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 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규율을 강화하여 보험산업에서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62] 독일에서의 Solvency II에 대한 법적 근거는 VAG 제53c조이다. 이에 따르면 보험자가 한 보험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사의 자본에 대한 법령(Verordnung über die Kapitalausstattung von Versicherungsnehmen; KapAustV)에도 필수적인 최소자기자본 및 회계기법에 대한 것을 규정하면서 Solvency II에 대한 근거를 덧붙이고 있다.[63]

다만 새로운 재무건전성 규제의 틀이 보험사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영역획정의 문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보험영역에서 이전보다는 보험사에 대한 지급여력 감독의 질이 명백히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보험감독법은, 특히 제81조에서 보험감독을 위하여 ① 제도의 오남용에 대한 감독(보험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에 대한 근절, ② 법률감독(규정에 따른 영업실행의 확보), ③ 금융감독(최소자본에 대한 감독), ④ 약관감독(인허가시 보험료산정에 대한 원칙과 보험약관의 제출)인 4가지의 주요과제영역을 끌어내게 되었다.

---

61) 제3층은 재무건전성 공시확대로 시장의 감시능력을 강화하는 시장규율강화를 말하는 것이다.

62) Markus Beringer, a.a.O., 119-122쪽 참조.

63) Prölss/Präve, *VAG*, 12. Aufl. 2005, 600쪽.

기업에서의 지불능력정책은 금융감독에 속하는 것이다. 이는 채권자 보호에 유익한 것이고 규정상 요구된 최소자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불능력의 기능은 기업의 채무초과상태와 이에 따른 결과로 생기는 지급불능상태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사의 위험인수에 대한 담보능력은 단순히 최소자본에 대한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지급불능상태는 적자를 통한 자기자본의 소진 외에도 유동자산의 부족을 통하여 유발될 수도 있다.[64]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험감독의 관점에서 지불능력에 대한 감독의 직접적인 목적은 인수한 위험에 영향을 받는 보험회사의 최소자기자본의 확정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과 연계되는 것으로,[65] 지불능력모델을 통하여 이 지불능력을 감독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를 위하여 Solvency I의 틀에서 단지 전통적인 보험감독관계를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그 범위를 확장시켜 Solvency II는 보험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66]

- 보험자의 실제적인 위험상황에 기준을 둔 경쟁법상 중립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감독체계의 확립,
- 보험사 기업내부의 위험관리체계의 발전 촉진,
- 질적인 구성요소에 부합하는 정도의 양적인 감독체계의 보완,

---

64) Bundesanstalt für Finazdienstleistunsaufsicht, Jahresbericht der undesanstalt für Finazdienstleistunsaufsicht 2004, Bonn, Frankfurt am Main, 2005b, 14쪽.

65) Dreher, "Versicherungsaufsichtsrecht und Verbraucherschutz im Solvency-II- und EIOPA System", *VersR* 2013, 401, 403: 그 외 Solvency II가 독일 보험감독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Dreher, "Die aufsichtsbehördliche Kontroll der Inhaber von Schlüsselfunktionen nach Solvency II und künfitige VAG", *VersR*, 2012, 1061-1073쪽; Krauel/Broichhausen, "Zu den Qualifikationsanforderungen an Aufsichtsräte in Versicherungsunternehmen vor dem Hintergrund von Solvency II", *VersR* 2012, 823-829쪽 참조.

66) Osetrova/Schmeiser, "Interne Risikosteurungsmodelle aus wissenschaftlicher Sicht", 〈http://www.wiwi.uni-muenster.de/vm/forschen/〉, 2005, 2쪽.

- 위험전가의 한 방법인 Alternative Risk Transfer(ART),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거대위험을 분산시키는 제도로서 보험에서는 일종의 재보험 영역에서의 발전,
- 국제회계기준(IFRS)와 함께 감독체계의 밀접한 관련성의 확보 등이다.

유럽연합의 Solvency II를 독일보다 더 일찍이 부분적으로 국내법으로 전환한 국가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국가는 이미 보험영역획정의 원칙을 포기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보험분야에서의 영역획정의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경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분석한 바 있다.[67]

1. Solvency II 의 국내법 전환 전후의 생명보험자의 위험상황이 어떠한가?
2. 독일에서 현재의 영역획정원칙을 보험경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3. 보험실무에서는 Solvency II 하에서 최신의 감독법의 발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4. Solvency II의 전환 후에 독일에서의 영역획정을 폐지할 가능성에 대하여 보험경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다.

2.2 Solvency II에 따라 판단된 영역획정에의 부정적 요소

최근 독일에서는 영역획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점차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독일에서의 영역획정을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분석할 때, 영역획정의 범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계속적으

67) Markus Beringer, a.a.O., 135쪽 이하.

로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법무비용보험, 신용보험 등에서는 영역획정이 폐지된 바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의 본점소재지 법인 본국법에 따라 감독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수용하면서부터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68]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영역획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거론하고 있다.

2.2.1 영역획정을 통한 경쟁적 측면의 손실

2.2.1.1 비용상의 손실

영역획정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과 독일의 보험시장과를 비교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보험시장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독일의 보험콘체른과 비교했을 때에 경쟁상 손실이 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여기에 덧붙여 기존의 경쟁상 손실과 향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도 경쟁상 손실간의 차이도 비교해 볼 만한 것이라는 논쟁도 있다. 영역을 확대하여 생기는 시너지효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다면 경쟁상 손실이 지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영역획정은 비용적인 손실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69] 이들의 논거에 따르면 직원조직 및 회계제도, 감독, IT인프라, 영업조직 내지 홍보조직 등의 내부조직인 동일한 영업조직을 가지고 두 배의 효과가 날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외부서비스조직에서도 이러한 것이 추정된다는 것이다.[70]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보험콘체른의 형성을 취하면 오히려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71] 보험실무에서는 공동으로 영업을 하기

68) Markus Beringer, a.a.O., 153쪽.

69) Meyer, Ernst, a.a.O., 125쪽; Schmidt, R. “Die Spartentrennung – eine juristische Analyse”, *ZVersWiss* (1964), 275쪽.

70) Meyer a.a.O., 125쪽; Schmidt a.a.O., 275쪽; Müller, H., a.a.O., 149.

71) Müller, a.a.O., 149쪽; Rohde-Liebenau a.a.O., 1973, 44쪽.

위하여 상호 기능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 통합을 함으로써 비용의 손실이 줄어들어 비용상 시너지효과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72] 최근에는 독일의 대형 보험콘체른에게서 영역확대로 인하여 생기는 시너지효과가 감지되기도 하였다.[73]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같은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이면에 보험콘체른을 통한 영역획정이 오히려 비용상의 손실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징표 또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보험영역획정과 함께 그 조직을 IT기술에 의존하여 비용절감의 방식으로 끌어가는 조직에 비하여 많은 보험콘체른에서의 영업과 판매가 운용비용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곧 그것이다.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영역획정이 비용상 손실을 가져온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작은 규모의 보험콘체른의 경우가 큰 규모의 보험콘체른에 비하여 더 큰 비용상의 손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공적인 보험콘체른은 사적 콘체른과는 반대로 영역획정을 통하여 비용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지 않았다.

2.2.1.2 소비자지향성의 약화

영역획정은 역사적으로 성장한 조직구조에 근거하여 또 다른 영업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영역획정으로 소비자 이익을 지향하는 성향이 약화되어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보험의 특정영역에의 집중(Spartenfokussierung)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심적인 장점 내지 이익으로써 해석되었던 보험상품에 대하여 강력한 전문화를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1994년 규제철폐 이래로 경쟁강화를 통하여 조

72) Balleer, M., "Spartentrennung – auch ein aktuarielles Thema?", in: Albrecht, P./Lorenz, E./Rudolph, B.(Hrsg.): *Risikoforschung und Versicherung*: Festschrift für Elmar Helten zum 65(Geburtstag, Karlsruhe, 2004), 42쪽; Zimmer, M., *Die Ausgliederung von Betrebsteilen im Versicherungsaufsichtsrecht* (Karlsruhe, 1989), 3쪽.

73) 예컨대 2004년에 보험그룹인 "ERGO"라는 보험그룹과 2006년 독일의 Allianz 주식회사의 "Vektor" 프로젝트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직을 구성할 때에 소비자지향을 위한 조건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74] 보험경제상 영역에 지배적이며 소비자에 연관된 보호의 형식으로, 특히 마켓팅, 영업, 회계에서 관리형식의 현실화를 통하여 이러한 변화에 적응되어 가고 있다.[75] 물론 영역획정 지향성을 포기하는 것에 따른 정보체계, 기업조직 및 보험콘체른의 경영과정에서 중대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어 Allianz의 경우는 통합보험(Kompositversicherung), 생명보험 및 의료보험 분야에서의 영역획정에 따른 IT플랫폼(시스템)이[76] 장차 수요에 상응하는 보험소비자에 대한 배려 내지 보호를 방해하는 것이며 교차판매가능성(Cross-Selling-Potentialen)을 어렵게 한다고 했다.[77] 영역획정과 소비자지향적인 측면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국제적인 복수영역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영역이 획정되어 영업을 하는 보험사가 콘체른을 형성할지라도 실무에서는 약화된 소비자지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물론 이 같이 약화된 소비자지향성에 의한 손실은 작은 보험콘체른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78] 결국 영역획정이 비용 손

74) Schmitz, 2002, 1570쪽; Warth/Beenken, 2005, 1692-1696쪽.

75) HUK-Coburg(독일보험사)은 전통적인 영역획정에 의한 조직관련 규정을 영역에 지배적인 소비자보호로의 성격을 가지는 판매 및 영업담당업무에 관한 구조적인 새 규정으로 전환하여 적용한 바 있다; Beringer Markus, a.a.O., S. 157 Fn. 763 참조.

76) Allianz콘체른은 2006년 1월 1일 이래로 실제 보험자인 Allianz 보험주식회사(손해 및 상해보험), Allianz 생명보험주식회사와 Allianz 의료보험주식회사의 영업활동을 하나의 지주회사인 Allianz 독일주식회사(Allianz Deutschland AG)로 묶었다. 그 외에도 세 영역과 관련한 상품을 통합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위의 지주회사와는 분리된 판매회사(Vertriebsgesellschaft)를 설립했다. 이 Allianz 판매회사는 분리된 통합보험, 생명보험과 의료보험을 위해 지금까지 세 개의 다른 그리고 분리된 IT플랫폼에서 보험료징수업무(Inkasso)와 같은 동종의 업무진행과정을 위한 여러 가지 컴퓨터정보처리결과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 공동의 IT플랫폼에의 통합은 현재 Allianz 독일지주회사의 범주 안에서 진행된 바 있다; Beringer Markus, a.a.O., 155-157쪽 참조.

77) Beringer Markus, a.a.O., 157쪽.

실뿐만 아니라 소비자 지향적이지도 못하여 그로 인한 어려움이 보험기업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2.2.1.3 상품구성에 있어서의 혁신성의 약화

보험에서 영역획정을 지향하는 것은 보험상품구성에 혁신성이 약화되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1994년 규제철폐 시기 전까지 새로운 상품의 개발은 주로 법조인을 통하여 각종 보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다가, 보험시장의 자유화 이후에는 상품개발이 소비자의 수요와 경쟁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발전하기 시작했고, 더욱이 경험적인 시장연구가 접목되어 사실상 상품구성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영역이 획정되거나 보험종목이 구분되는 범주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 예컨대 가족보험(Familienversicherung)을 통한 개인고객영업에서는 생명, 질병, 상해, 가재도구 및 개인책임 등을 결합하여 이를 하나의 보험증권에 기재하고 순수하게 전 위험을 부보하는 보상은 아직까지는 상품화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 영역획정에 근거하여 영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상품 내지는 법률상 독립적인 기업 간 상품의 결합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여러 개의 개별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해야하는 것이다.[79] 이러한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상품개발에 대한 실제적인 추진력이 있을 수 없고 독일이 보험시장에서 보험의 영역획정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을 잃어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80]

---

78) Beringer Markus, a.a.O., 158쪽.

79) 이와 관련하여 Kluge 의하면 개인이 자신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개의 개별 보험계약을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Kluge, “Noch immer dominiert die Sparte die Produkwelt”, *VW* (2004), 142쪽.

80) Beringer Markus, a.a.O., 159쪽.

2.2.2 국제적인 비교

영역획정에 따른 경쟁력약화는 무엇보다도 비영역획정의 영업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보험사와 직접적으로 경쟁상 문제가 제기된다. 1994년 제3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실시되는 소재지감독원칙(Das Prinzip der Sitzlandaufsicht)[81]에 근거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의 보험사는 유럽연합의 어느 지역에서건 영업이 가능하다. 더욱이 그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을 받는다. 그렇다면 회원국의 감독법이 영역획정에 대하여 절대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회원국의 보험사는 독일에서 영역지배적인 즉 영역획정을 고수하지 아니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영역을 넘나들며 영업을 하게 되어 보험상품의 판매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79/167/EWG의 지침 제13조 제1항에 따라 영역획정의 원칙이 확정되었다. 이때에 동 지침 제7조에 의하여 새롭게 보험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만 이 원칙이 적용되었다. 지침이 의결되었던 당시 복수영역의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던 보험사는 이와는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동 지침 제13조 제6a항과 제6b항에 따라 보험사에게 복수영역보험영업에 대하여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었다. 이 이외에도 각 유럽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은 제13조 제6c항에 의하여 동시에 생명보험, 의료보험 및 상해보험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82] 다만 복수영역 보험자는 제1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영역획정에 대신하여 분리된 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했다. 즉 수입과 지출은 보험사로부터 원인에 적합하고 출처에 맞게 기장하고 각 영역을 위하여 분리된 지불능력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여야 했다.[83]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복수영역 보험자를 위한 특별규정을 이용하는

---

81) 보험영업을 하고자 하는 보험사는 본국 감독법규에 따라 인허가를 받았다면 유럽연합 회원국의 어느 곳에서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업무관련 감독도 본적지국의 감독법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원칙이다.

82) Beringer Markus, a.a.O., 165쪽.

83) Präve, *VAG* (1994), 168쪽.

사례와 관련하여 그리고 생명보험자가 의료보험과 상해보험을 수행하기 위한 선택권의 주장 등과 관련하여 지침의 규정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다.

〈영역획정에 관한 EU 회원국의 비교[84]〉

국가명	생명보험안에서 영업의 가능성		특별규정
	의료보험	상해보험	
벨기에	O	O	1) 1992년 11월 27일 이전을 기준으로 기존의 복수영역보험자는 계속해서 복수영역의 영업이 허용된다. 2) 오로지 상해보험 또는 의료보험영업을 행하는 통합보험자는 추가적으로 생명보험영업이 허용된다.
덴마크	O	O	X
독일	X	X	X
에스토니아	O	O	X
핀란드	O	O	X
프랑스	O	O	X
그리스	–	–	1996년 이전을 기준으로 기존의 복수영역보험자는 계속해서 복수영역의 영업이 허용된다.
영국	O	O	1) 1982년 이전을 기준으로 기존의 복수영역보험자는 계속해서 복수영역의 영업(장기+일반업무)이 허용된다. 2) 오로지 상해보험 또는 의료보험영업을 행하는 통합보험자는 추가적으로 생명보험영업이 허용된다.
아일랜드	O	X	X
이탈리아	O	O	1994년 이전을 중심으로 기존의 복수영역보험자는 분리된 업무범위를 준비하여야 하지만, 계속해서 복수영업업무가 허용된다.
라트비아	O	O	X
리투아니아	O	O	X
룩셈부르크	O	O	1994년 이전을 중심으로 기존의 복수영역보험자는 분리된 업무범위를 준비하여야 계속해서 복수영역업무가 허용된다.
몰타	–	–	기존의 복수영역보험자는 계속해서 복수영역업무가 허용된다.
네덜란드	X	X	X
오스트리아	X	X	1992년 5월 2일 이전을 기준으로 기존의 복수영역보험자는 계속해서 복수영역업무가 허용된다.
폴란드	O	O	X
포르투갈	부분적	X	X

84) Beringer Markus, a.a.O., 167쪽.

스웨덴	O	O	X
슬로바키아	O	O	2000년 4월 1일 이전을 기준으로 기존의 복수영역보험자는 계속해서 복수영역업무가 허용된다.
슬로베니아	O	O	1) 2000년 3월 13일 이전을 기준으로 기존의 복수영역보험자는 계속해서 복수영역업무가 허용된다. 2) 오로지 상해보험 또는 의료보험영업을 행하는 통합보험자는 추가적으로 생명보험영업이 허용된다.
스페인	X	X	X
체코	O	O	2000년 4월 1일 이전을 기준으로 기존의 복수영역보험자는 계속해서 복수영역업무가 허용된다.
헝가리	O	O	1995년 12월 31일 이전을 기준으로 기존의 복수영역보험자는 계속해서 복수영역업무가 허용된다.
사이프러스	O	O	기존의 복수영역보험자는 계속해서 복수영역업무가 허용된다.

유럽의 회원국은 기존의 복수영역보험자를 위한 특별규정의 사용과 관련하여 또한 의료보험과 상해보험영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택권을 이용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럽의 규정에 상응하여 보험에서 영역획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형식적으로 법령화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즉 EU규정에 상응하여 EU회원국 모든 나라가 보험사 신규설립을 하는 경우에 영역획정의 원칙을 형식적인 규정 정도로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과는 달리 생명보험자가 거의 모든 EU 국가에서 의료보험과 상해보험을 통합하여 생명보험과 함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외국보험사의 본국과 관련하여 볼 때 독일이 불균등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독일적인 관점에 의한 이 같은 오류를 '국내보험사의 차별'로 보기도 한다.[85] 독일시장에서 자회사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개의 외국 보험콘체른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서 이러한 손해를 떠안지 않으려는 방향에서 영역획정의 원칙을 피하고 있다. 이 같은 전형적인 예가 프랑스의 보험사인 AXA-콘체른이다.

결국 시장의 변화와 법학적 획정 사이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독일의 예라고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독일에서는

85) Prölss, a.a.O., 174쪽.

영역획정의 원칙을 제한하면서 보험콘체른을 형성하는 것으로 향후 발전과제로 내어놓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보험자에 대한 감독법적인 검사 내지 감독은 일차적으로 개별적인 보험사에서 행하고(일명 Solo-Aufsicht, 단독 감독) 다만 보험그룹의 지불능력에 대한 판단은 보험감독법 제104a조에서 제104i조에 따른 단독-복수 감독(Solo-Plus Aufsicht)을 행하고 종합금융사의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감독은 보험감독법 제104k조에서 제104w조에 따라 일정하게 이루어지면 된다고 본다. 콘체른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은 그러나 다소 제한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86]

Ⅵ. 맺는 말

다른 보험종목과는 달리 생명보험의 경우는 특별한 사회적 의미 하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역설되기도 한다. 거의 모든 유럽연합회원국은 물보험과 생명보험사이의 영역획정의 근간이 많이 변질되었으나, 독일의 경우는 생명보험이 가지는 특징을 간과할 수 없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거 독일에서의 영역획정의 필요성은 독일 자체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 안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현재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생명보험영역에 대한 획정은 상위의 원리로서의 그 역할을 보험경제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콘체른을 형성하는 경향을 통하여 예컨대 유럽에서 영업자유의 원칙이나 서비스자유의 원칙의 완결과 유럽의 복수영역보험자의 이와 결합된 시장진입의 가능성을 통하여 독일의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의 영역획정의 원칙이 현재 상태에서 점차 그 기반을 잃었다고 보면 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영업에 있어서의 높은 비용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86) Schradin, *Entwicklung der Versicherungsaufsicht* (2003), 14-18쪽.

제기되었고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원스톱서비스와 같이 '한 보험자에 의한 다양한 보험의 제공(Versicherungen aus einer Hand: Allbranchenangebot)'[87] 에 만족하는 경향이 생겼다. 더욱이 다른 보험영역, 예컨대 신용보증보험 및 권리보호보험에서의 영역획정은 유럽통합의 선상에서 폐지된 바 있다. 이러한 폐지가 독일 보험경제에 대하여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피보험자의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생명보험과 물보험간의 영역획정은 국가적인 관리가 전제되는 부분인데 그럼으로써 영역획정이 기업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영역에서 영역획정을 폐지하는 것이 보험시장을 일관되게 만들지 못하며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시장에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의 보험의 영역획정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보험경제상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왔다. 사회적으로 생명보험자의 청구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보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영역획정의 원칙은 79/167/EWG 지침 제13조와 제14조 및 92/96/EWG 제16조에 따라 유럽법으로 규정된 바 있다. 영역획정은 유럽법의 원칙인 영업자유의 원칙과 영업소이전의 자유 등의 조화를 위한 측면에서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영역획정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독일법에서는 유럽연합의 요구에 따라 신용보험과 권리보호보험(법무비용보험) 분야에서는 이 원칙을 폐지하였고 현재 생명보험과 의료보험에서는 선택권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 보험분야에서의 영역획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험회사가 영역획정의 불이익 내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콘체른을 형성하여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감독체제 안에서 이 분야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독일이 영역획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특정범위에서는 경쟁

87) Brachmann, Harald, *Das Spartentrennungsgebot* (2004), 1072쪽.

법상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보험콘체른의 형성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역시 비용문제와 관련이 된다.

향후 Solvency II의 국내법으로의 전환과 함께 영역획정의 원칙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영역획정의 완벽한 폐지를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개별 위험의 위험률의 정치한 계산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영역획정으로 인한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로 인한 손실은 다시 보험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영역획정의 폐지는 무엇보다도 보험콘체른의 영업모델에 대한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이러한 영업모델의 변화는 생명보험시장에서의 경쟁적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Solvency II가 독일의 감독법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지속적으로 보험에서의 영역획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포기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험시장에 어떠한 행보를 하여 보험시장을 탄탄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보험사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한 일련의 강화체계 중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비율이란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급여력 지표를 말한다. 보험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위험기준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보험사들이 사업비 개선 등의 자구노력을 포함해 자본확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리스크를 관리강화하는 문제가 단순히 자기자본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수치상의 문제에 국한할 일이 아닌 듯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규제강화 추세는 은행업의 자본규제

강화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은행의 자본규제의 원칙과 보험사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산업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Basel II 이후에 보험업계에 내려진 Solvency II를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보험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의 영역획정 문제에 대한 시장의 변동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이와 유관한 것이다. 다만 영역획정의 문제를 유럽연합의 흐름과 같이 우리나라가 따라가기에는 보험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자본규제방식은 특히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 의하여 강화하고 주도하는데 주로 이는 유럽연합의 동향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최근의 유럽연합에서의 보험산업과 보험감독법의 변화동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투고일 2013년 12월 31일, 심사(의뢰)일 2014년 1월 16일,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21일)

주제어 : 영역획정, 보험감독법, 생명보험, 손해보험, 의료보험, 재보험, 지불능력, 최소자본, 보험소비자 보호

참고문헌

1. 단행본

Braumüller, *Versicherungsaufsichtsrecht*, Wien/New York, 1999.

Dieter Farny, *Versicheungsbetriebslehre*, VVW, 2006.

Fahr/Kaulbach/Bähr, *VAG*, C.H.Beck, 2007.

Gesamtverband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e.V. Jahrbuch 2012.

Helmut Gründl, *Solvency II & Risokomanagement: Umbruch in der Versicherungswirtschaft*, Gabler, 2005.

Langheid/Wandt, *VVG*, C.H.Beck, 2010.

Looschelders/Pohlmann, *VVG*, Carl Heymanns, 2009.

Markus Beringer, *Das Spartentrennungsprinzip der Lebensversicherung: Nach Umsetzung von Solvency II noch zeitgemäß?*, VVW, 2007.

Meyer, Ernst, *Die Spartentrennung im Gemeinsamen Markt, Versicherungswirtschaft im Gemeinsamen Markt*, Baden-Baden 1967.

Oehlenberg/Stahl/Bennemann, "Von der Standardformel zum Internen Modellß ein Überblick über Solvencz II", *Handbuch Solvency II*, Schäffer-Poeschel, 2011.

Petersen, *Versicherungsunternehmensrecht*, C.H.Beck, 2003.

Pröls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12. Aufl. C.H.Beck 2005.

Rüffer/Halbach/Schimikowski, *Versicherungsvertragsgesetz*, Nomos, 2009.

2. 논문

Dreher, “Die aufsichtsbehördliche Kontrolle der Inhaber von Schlüsselfunktionen nach Solvency II und künftigem VAG”, *VersR*, 2012, 1061-1073쪽.

Dreher, “Versicherungsaufsichtsrecht und Verbraucherschutz im Solvency-II-und EIOPA System”, *VersR* 2013, 401-412쪽.

Knauth, “Spartentrennungsgebot und Konzentration in der Versicherungswirtschaft”, in FS Kollhosser, *Recht und Risiko*, Bork/Hoeren/Pohlmann, 2004, 203-218쪽.

Krauel/Broichhausen, “Zu den Qualifikationsanforderungen an Aufsichtsräte in Versicherungsunternehmen vor dem Hintergrund von Solvency II”, *VersR* 2012, 823-829쪽.

Müller, Helmut, “Der Grundsatz der Spartentrennung im Gemeinsamen Markt nach Verabschiedung der Koordinierungsrichtlinien für die Lebensversicherung”,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Versicherungswissenschaft*, 1979, 147-168쪽.

Rhode-Liebenau, Wolfram, “Spartentrennung als Ordnungsprinzip der Versicherungsaufsucht”,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Versicherungswissenschaft*, 1973.

Schmidt, Reimer, “Die Niederlassungsfreiheit der Versicherer”,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Versicherungswissenschaft*, 1966, 769-770쪽.

3. 기타

Angerer ZfV 1983, 134, 142.

BaFin-Jahresbericht 2012.

Bürkle DB 2003, S. 1701-1705.

Dreher ZVersWiss 1988, S. 619-633.

Nowak VW 1966, S. 1358-1365.

Präve ZfV 1994, S. 227-235.

Begründung zu Art. 1 Nr. 5 des Referentenentwurfs eines 14. Änderungsgesetzes zum VAG, BR-Drucks, 429/81, S. 20.

Bericht des BT-Finanzausschusses, BT-Dr. 7/3357, S. 3.

Erste Richtlinie des Rates 79/267/EWG vom 5. März 1979 zur Koordinierung der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über die Aufnahme und Ausübung der Tätigkeit der Direkt versicherung (Lebensversicherung).

Richtlinie 2009/138/EG des Europäischen Paraments und vom 25. November 2009 Rates betreffend die Aufnahme und Ausübung der Versicherungs- und der Rückversicherungstätigkeit (Solvabilität II).

http://www.gdv.de/2013/10/solvency-ii-auf-der-zielgeraden.

http://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DE/Meldung/2013/meldung_131220_vorbereitung_solvency_ii.html.

www.statistik.lmu.de/~kaiser/vortragspartentrennung.ppt.

[Zusammenfassung]

Die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Spartentrennung der Lebensversicherung im Deutschen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Eun-Kyung Kim*

Die Spartentrennung ist ein Grundsatz des Versicherungswesens nach dem deutschen Versicherungsaufsichtsgesetz(VAG). Gemäß VAG § 8 Abs. 1a dürfen Versicherungsunternehmen, die im Lebens- oder substitutiven Krankenversicherungsgeschäft tätig sind, keine anderen Versicherungssparten, also kein Schaden- und Unfallversicherungsgeschäft betreiben. Schon lange die deutsche Aufsichtpraxis entwickelte das Spartentrennungsgebot. Dieses Prinzip besagt, dass den Versicherungsunternehmen zur ausreichenden Wahrung der Interessen Versicherten die Erlaubnis zum gleichzeitigen Betrieb der Lebens- oder substitutiven Krankenversicherung mit anderen Versicherungssparten von der Aufsichtsbehörde zu untersagen ist. Dadurch wird eine gesellschaftsrechtliche Trennung der Vermögensmassen erreicht. Obwohl dieses Spartentrennungsprinzip die europäische Rechtsebene aufnahm, ist dieses allmählich abgeartet oder aufgegeben. Wegen des Bedarfs der Versicherungspraxis war die Spartentrennung war und ist förderlich für die Bildung von Versicherungs-Konzernen in Deutschland.

Zeit kurzem hat die Solvency II-Richtlinie die grosse Rolle für die Versicherungsaufsicht. Solvency II ist ein Projekt der EU-Kommission zu

* Professor, Law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iner grundlegenden Reform des Versicherungsaufsichtsrechts in Europa, vor allem der Solvabilitätsvorschriften für die Eigenmittelausstattung von Versicherungsunternehmen. Nach dem Solvency II-Projeckt benötigt die minimalen Ausstattung mit Sicherheitskapital,, wodurch das Insolvensrisikos eines Versicherungsunternehmes auf eine zu akzeptierende Solvabilitätsszstem mit zahlreichen risikotheoretischen Mängeln behaftet. Noch dazu gäbe es mit der Fixierung von Solvency II die Möglichkeit, das Spartentrennungsprinzip aufzuheben bzw. aufzugeben. Dieser Verlauf müsste zur Teilnahme an de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Versicherungsmakrt betracht werden.

Schlüsselwörter : spartentrennung,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lebensversicherung, schadensversicherung, krankenversicherung, rückversicherung, solvency, minimumkapital, versicherungsverbraucherschutz